

# 최대 12% 지원...내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만 19-34세 청년·월 최대 50만원 한도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기회 제공  
검증 강화·서버 증설...오류 방지책 마련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된다. 통과되면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기간(지난 6월22일-7월3일)에는 신청자 중 138만5천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다며 추가 운영을 검토해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개요

| <b>가입기간</b>         | 2026년 10월 7일~10월 16일<br>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능.<br>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같이타기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b>가입대상</b>         | 만 19~34세 청년<br>※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                                                                                                                                                                                                                                                                                                                                                                                                                       |                             |       |           |           |      |              |  |       |                                 |                             |          |                                 |  |          |                                 |                             |      |              |  |
| <b>가입조건</b>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동시 충족                                                                                                                                                                                                                                                                                                                                                                                              |                             |       |           |           |      |              |  |       |                                 |                             |          |                                 |  |          |                                 |                             |      |              |  |
| <b>납입액</b>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3년 만기)                                                                                                                                                                                                                                                                                                                                                                                                                                            |                             |       |           |           |      |              |  |       |                                 |                             |          |                                 |  |          |                                 |                             |      |              |  |
| <b>지원 내용</b>        |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 추가 및 이자소득세 면제                                                                                                                                                                                                                                                                                                                                                                                                                                              |                             |       |           |           |      |              |  |       |                                 |                             |          |                                 |  |          |                                 |                             |      |              |  |
| <b>정부 기여금 적용 대상</b> | <table><tr><th>소득 기준</th><th>① 연소득 연매출</th><th>② 가구 중위소득</th></tr><tr><td>소상공인</td><td>연 매출 3억 원 이하</td><td></td></tr><tr><td>일반소득자</td><td>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td><td>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td></tr><tr><td>중소기업(신규)</td><td>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td><td></td></tr><tr><td>중소기업(재직)</td><td>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td><td>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td></tr><tr><td>소상공인</td><td>연 매출 1억 원 이하</td><td></td></tr></table> |                             | 소득 기준 | ① 연소득 연매출 | ② 가구 중위소득 |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중소기업(신규) |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 중소기업(재직) |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 | 소상공인 | 연 매출 1억 원 이하 |  |
| 소득 기준               | ① 연소득 연매출                                                                                                                                                                                                                                                                                                                                                                                                                                                              | ② 가구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신규)            |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재직)            |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연 매출 1억 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b>금리</b>           | 3년 고정금리, 최고 연 7~8% 수준 (기본금리 5% + 기관별 우대금리 2~3%p)                                                                                                                                                                                                                                                                                                                                                                                                                       |                             |       |           |           |      |              |  |       |                                 |                             |          |                                 |  |          |                                 |                             |      |              |  |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는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면제만 적용

연합뉴스 자료: 금융위원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종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초 모집과 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명했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할 기회도 준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특별전 16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특별전'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aT, 전국 직거래장터서 '추석맞이 특별행사'

### 담양장터서 명절 선물세트 등 선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 “추석을 맞아 전국 주요 직거래장터 곳곳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특별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5일까지 장터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지역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우리 농축수산물과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담양장터가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지방 주요 거점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추석맞이 행사가 마련된다.

충남 공주시 '바로마켓 백제금강점'에서는 19

일부터 20일까지 공주 밤 등 지역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운영하며, 대전시 '파머스마켓 베지레빗 804장터'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6차 산업 인증 우수경영체 상품 특별할인전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제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국 직거래장터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직거래장터의 추석맞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농산물 종합정보 누리집 '바로정보' (www.baroinf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태호 기자

# 재개장 홈플러스, 매출 부진·M&A 난항 ‘이중고’

## 목표 대비 매출 40% 그쳐

## 성수품 납품대금 우선 지급

## 미지급 임금 분할지급키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인수합병(M&A) 물꼬도 트지 못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 직원 임금은 두 차례에 나눠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홈플러스는 일반노조, 마트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회사 경영 상황을 알렸다.

홈플러스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매출 대비 40

%가량 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해나가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가 희망퇴직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또 7월분 미지급 임금을 9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9일과 30일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상품 확보를 위한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은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다.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 대금과 인건비까지 유동성 문제를 겪는 셈이다.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규모 역시 수천억원에 달해 향후 유동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천871억원에 달한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 매각 작업 역시 쉽지 않은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